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7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학 ς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95년 7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7. 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7. 10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증가 되는 행정수요 및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정무 부시장을 두고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로 함. (안 제1조)
- 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 정 무부시장을 둠. (안 제2조 제1항)
- 다.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과 시의 공무원 지도감독

10

사무를 분장하고,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

사 · 회의참석,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국회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사회

단체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을 정무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분장함. (안 제2조 제2항)

3.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고 그 사무분 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의 근거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로 하였음.

둘째, 안 제2조에서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도록 하였음.

셋째, 부시장의 사무분장으로써 행정부시장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 공무원의 지도·감독사항을 맡도록 하였으며, 정무부시장은 정무적행사와 회의참석, 의회관련사항, 정부, 국회관련사항, 정당·사회단체에 관한 대외적 사항등을 맡도록 하였음.

따라서 금번 안건은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무부시장의 증원 에 따라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에 대하여 그 사무한계등을 규 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상호간 에 업무의 적정한 배분은 필요하다고 사료됨.